

공 직 선 거 법

[강평 및 해설 : 채한태 교수]

총 평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9급 공직선거법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 기출문제 유사문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출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제경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특히, 헌법재판소 최신판례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두는 판례의 반복적인 출제)
둘째, 기본적인 조문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명품 공직선거법 기본서와 헌법재판소 판례특강 수업을 들으면서 반복학습을 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 출제경향분석

가.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최근 출제경향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많이 출제하는 추세이며 이번 시험에서도 총 20문항 중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시사적인 판례와 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 접자형 선거공보물 임의적 규정, 한국철도공사 상근임직원 선거운동제한, 예비후보자 선거보전금 제외 등에 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선거쟁송, 후보자 추천, 선거운동, 선거비용, 기탁금 재외선거, 투표용지 등에 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 시사적인 내용 출제

선거구획정, 국회의원 수, 재선거와 보궐선거 투표참여권유 등에 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 2020년 선관위직 대비 공직선거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공직선거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조문을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수시로 읽어야 합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 간 각종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다섯째, 명품공직선거법 기본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직선거법 완전정복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수험생 분들이 필기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채한태 면접특강에서 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1. 공직선거법 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 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정답[②] 및 해설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02.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답[②]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 2. 29.>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03.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②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0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한다.
-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상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 정답[②]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04.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정답[③]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05.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60%이다.
- ②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사람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 정답[③] 및 해설

③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은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 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므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 : 1)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의 지역대표성과 각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간 불균형 등 2차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반면,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 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2차적 요소를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 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재 2018.6.28. 선고, 2014헌마166)

- ②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 ④ 공직선거법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시의 선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06. 공직선거법 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4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③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채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그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1명마다 1천 500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④]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제2호에는 국회의원의 기탁금이 1천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헌법불합치 판결(2015헌마509, 2016. 12. 29.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로 인해 해당 법률조항은 **2018. 7. 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07.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7.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 하는 날까지 설치·운영된다.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에게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ㄷ.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2.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 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 ① $\neg$, $\perp$
② $\perp$, $\exists$
③ $\neg$, $\forall$, $\exists$
④ $\perp$, $\forall$, $\exists$

☞ 정답[③] 및 해설

㉔.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⑩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08. 공직선거법 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 한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현수막 등 시설물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선거일에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정답[①]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선거에 한하여’라는 지문이 잘못 되었다.

09. 공직선거법 상 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 ② 읍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동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선거 벽보를 작성·첨부한다.
- ③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학력·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정답[④] 및 해설

- ④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제7항
- ①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와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0. 공직선거법 상 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③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정답 [①]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선상투표)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11.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 필요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④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선거일 전 6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정답 [④]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12. 공직선거법 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정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정당은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④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답 [③]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13.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답 [①]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보낼 선상투표 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로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게 대하여는 당해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③]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5. 공직선거법 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선거운동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반환사유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④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정답 [①] 및 해설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투표참여 권유를 방자한 선거운동이 방지되지 않도록 이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심판대상조항의 처벌 범위 및 법정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 신설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그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인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전원재판부 2017헌가9, 2018. 7. 26., 합헌]

- ② 현재 2018.07.26. 2017헌가11]
- ③ 현재 2013. 11. 28. 2012헌마568
- ④ 전원재판부 2016헌마524, 2018. 7. 26

16. 공직선거법 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兵)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병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전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①] 및 해설

심판대상조항이 병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부무하는 병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 ②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 ③ [현재 2016. 12. 29. 2016헌마548]
- ④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17. 공직선거법 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당·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당·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이 정당·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②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과 후보자의 성명·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 ③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답 [②]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①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정책공약집"이라 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18.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합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방법이 반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및 해설

심판대상조항이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계획 및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 문서·도화, 인쇄물은 정보의 전달 및 수용이 일방적,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전달되는 정보 및 의견에 대해 즉시 교정이 가능하지 않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인터넷과는 다르다는 점, 문서·도화, 인쇄물은 손쉽게 제작, 배부될 수 있어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규제만으로 그 폐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거나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8.07.26. 2017헌가11]

- ① (헌재 2018.02.22. 2015헌바124)
- ②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 ④ (헌재 2013. 10. 24. 2012헌바311)

19. 공직선거법 상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경우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 ②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보궐선거로 본다.

정답 [④]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②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20.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 개표결과 그 후보자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및 해설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④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